

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발의연월일: 2003. 7. 10.

발 의 자: 이기동의원

가. 수정어유

- 조항별 상호간의 부조화(기존의 조항 삭제 등)로 동 조례내용에 대한 이해성과 명료성이 떨어지고 조례 체계가 혼잡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어
- 이를 보완 정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제고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인원을 9인 이내로 함(안 제2조)
-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둠(안 제2조)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하여
 - 위원회운영 규정을 신설하고
 - 관사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를 2인이상 구성토록 하며
 -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도록 함.
-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심사판으로 위촉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,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함.